

##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 (제2조 관련)

|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표준금액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1.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20,000원 |
| 2.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20,000원 |
| 3.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20,000원 |
| 4.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20,000원 |
| 5.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20,000원 |
| 6.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20,000원 |
| 7.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20,000원 |
| 8.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2항, 제26조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, 게임배급업, 일반게임제공업, 청소년게임제공업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,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·등록·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| 1건당 5,000원  |
| 9. 「공연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10,000원 |
| 10. 「공연법」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5,000원  |
| 11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(신규) 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5,000원  |
| 12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(갱신 또는 기간연장) 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3,000원  |
| 13. 「공인중개사법」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800원    |
| 14. 「공인중개사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(개인)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20,000원 |
| 15. 「공인중개사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(법인)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30,000원 |
| 16. 「공인중개사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800원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17. 「공인중개사법」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10,000원 |
| 18. 「공인중개사법」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800원    |
| 19. 「공인중개사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·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(등록인장 변경)신고 수수료           | 1건당 800원    |
| 20. 「공인중개사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800원    |
| 21. 「관광진흥법」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(조건부 영업허가) 신청 수수료            | 1건당 60,000원 |
| 22. 「관광진흥법」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(조건부 영업허가) 신청 수수료            | 1건당 50,000원 |
| 23. 「관광진흥법」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(변경신고) 수수료                   | 1건당 30,000원 |
| 24. 「관광진흥법」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(변경신고) 수수료                   | 1건당 15,000원 |
| 25. 「관광진흥법」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(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) 신고 수수료             | 1건당 30,000원 |
| 26. 「관광진흥법」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(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)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    | 1건당 15,000원 |
| 27. 「관광진흥법」 제31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10,000원 |
| 28. 「낙시어선업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낙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2,500원  |
| 29. 「내수면어업법」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(양식어업·정치망어업)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9,000원  |
| 30. 「내수면어업법」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(공동어업)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7,500원  |
| 31. 「내수면어업법」 제9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(자망어업·종묘채포어업·연승어업·패류채취어업·낭장망어업·각망어업) 수수료 | 1건당 5,000원  |
| 32. 「내수면어업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1,000원  |
| 33. 「내수면어업법」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5,000원  |
| 34. 「내수면어업법」 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(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3,000원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害漁法)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35.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800원    |
| 36.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                 | 1필지당 800원   |
| 37.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                 | 1주택당 800원   |
| 38.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                 | 1주택당 800원   |
| 39. 「비료관리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30,000원 |
| 40. 「비료관리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20,000원 |
| 41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2,000원  |
| 42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1,000원  |
| 43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1,000원  |
| 44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(일반대리점·용제대리점) 등록신청(조건부 등록신청) 수수료 | 1건당 30,000원 |
| 45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(주유소) 등록신청(조건부 등록신청) 수수료         | 1건당 20,000원 |
| 46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(용제판매소) 등록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10,000원 |
| 47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(부생연료유통판매소) 등록신청(조건부 등록신청) 수수료   | 1건당 20,000원 |
| 48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(일반판매소·항공유통판매업·특수판매소) 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| 1건당 10,000원 |
| 49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(석유대체연료 대리점) 등록신청(조건부 등록신청) 수수료 | 1건당 30,000원 |
| 50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20,000원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(석유대체연료 주유소) 등록신청<br>(조건부 등록신청)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51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<br>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(석유대체연료 판매소) 등록신청<br>(조건부 등록신청) 수수료 | 1건당 10,000원 |
| 52. 「소방기본법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를 증명<br>하는 서류(화재증명원)의 발급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800원    |
| 53.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·진동 배출<br>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10,000원 |
| 54.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·진동 배출<br>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5,000원  |
| 55.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8조제2항에 따른 소음·진동 배출<br>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5,000원  |
| 56. 「소하천정비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·사용 허<br>가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1,000원  |
| 57. 「소하천정비법」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하천 원상회<br>복 의무 면제 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1,000원  |
| 58.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0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·사용허가<br>효력 회복 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1,000원  |
| 59.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5조에 따른 폐천부지 교환신청 수수<br>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1,000원  |
| 60. 「수산업법」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, 어업허가 및 신고어<br>업공동신청사항(대표자의 선정·변경·지분변경) 신고 수수<br>료               | 1건당 1,000원  |
| 61. 「수산업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5,000원  |
| 62. 「수산업법」 제8조제1항,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<br>어업면허증·관리선사용지정증(어선사용승인증) 재발급 수수<br>료              | 1건당 1,000원  |
| 63. 「수산업법」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<br>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1,000원  |
| 64. 「수산업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<br>허가 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3,000원  |
| 65. 「수산업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<br>등본·초본 발급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800원    |
| 66. 「수산업법」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(지분) 이전<br>인가 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4,000원  |
| 67. 「수산업법」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분할 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2,500원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68. 「수산업법」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| 1건당 3,000원 |
| 69. 「수산업법」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(주소·성명·대표자·선박명칭) 수수료          | 1건당 1,000원 |
| 70. 「수산업법」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     | 1건당 1,000원 |
| 71. 「수산업법」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| 1건당 1,000원 |
| 72. 「수산업법」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 휴업(휴업연장) 신고 수수료             | 1건당 1,000원 |
| 73. 「수산업법」 제30조제3항에 따른 어업재개 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1,000원 |
| 74. 「수산업법」 제30조제5항에 따른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1,000원 |
| 75. 「수산업법」 제41조,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 증(신고어업증명서)의 재발급 수수료   | 1건당 1,000원 |
| 76. 「수산업법」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4,500원 |
| 77. 「수산업법」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2,500원 |
| 78. 「수산업법」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4,500원 |
| 79. 「수산업법」 제41조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4,000원 |
| 80. 「수산업법」 제41조제3항에 따른 종묘생산어업 허가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4,000원 |
| 81. 「수산업법」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1,500원 |
| 82. 「수산업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2,000원 |
| 83. 「수산업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2,000원 |
| 84. 「수산업법」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2,000원 |
| 85. 「수산업법」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업 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1,500원 |
| 86. 「수산업법」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1,500원 |
| 87. 「수산업법」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1,500원 |
| 88. 「수산업법」 제48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1,000원 |
| 89. 「수산업법」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·신고 어업 폐업 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 | 1건당 800원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90. 「수산업법」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  | 1건당 1,000원  |
| 91. 「수산업법」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| 1건당 800원    |
| 92. 「수산업법」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  | 1건당 1,000원  |
| 93. 「수산업법」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3,000원  |
| 94. 「수산업법」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| 1건당 3,000원  |
| 95. 「수산업법」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2,000원  |
| 96. 「수산업법」 제84조제1항에 따른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3,000원  |
| 97. 「수산업법」 제85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3,000원  |
| 98.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            | 1건당 4,500원  |
| 99.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| 1건당 3,000원  |
| 100.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·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         | 1건당 3,000원  |
| 101.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수수료          | 1건당 50,000원 |
| 102.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      | 1건당 20,000원 |
| 103.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         | 1건당 4,000원  |
| 104. 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1,000원  |
| 105. 「어선법」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(건조발주) 허가 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| 1건당 2,000원  |
| 106. 「어선법」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(개조발주) 허가 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| 1건당 1,000원  |
| 107. 「어선법」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(건조발주)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       | 1건당 2,000원  |
| 108. 「어선법」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(개조발주)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       | 1건당 1,000원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109. 「어선법」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(어선건조·개조허가서, 허가사항변경허가서, 선박국적증서, 선적증서, 등록필증, 선박국적증서영역서) 수수료 | 1건당 1,000원  |
| 110. 「어선법」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3,000원  |
| 111. 「어선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·초본 발급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800원    |
| 112. 「어선법」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1,000원  |
| 113.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업 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20,000원 |
| 114.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10,000원 |
| 115.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5,000원  |
| 116.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20,000원 |
| 117.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10,000원 |
| 118.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20,000원 |
| 119.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20,000원 |
| 120.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20,000원 |
| 121.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·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10,000원 |
| 122.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5,000원  |
| 123.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·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20,000원 |
| 124.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·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20,000원 |
| 125.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20,000원 |
| 126.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20,000원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27.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·음악영상물제작업, 음반·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| 1건당 10,000원  |
| 128.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| 1건당 10,000원  |
| 129.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| 1건당 5,000원   |
| 130.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음반·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| 1건당 4,000원   |
| 131.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| 1건당 10,000원  |
| 132.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| 1건당 10,000원  |
| 133.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(양도·양수신고에 한정한다) 수수료   | 1건당 10,000원  |
| 134.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(양도·양수신고에 한정한다) 수수료    | 1건당 10,000원  |
| 135. 「의료법」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40,000원  |
| 136. 「의료법」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100,000원 |
| 137. 「의료법」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20,000원  |
| 138. 「의료법」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40,000원  |
| 139. 「의료법」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40,000원  |
| 140. 「의료법」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100,000원 |
| 141. 「의료법」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20,000원  |
| 142. 「의료법」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| 1건당 40,000원  |
| 143. 「의료법」 제8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800원     |
| 144. 「전기공사업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40,000원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청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145. 「전기공사업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수수료                  | 1건당 5,000원  |
| 146. 「전기공사업법」 제4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30,000원 |
| 147. 「전기공사업법」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(양도·양수, 합병) 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| 1건당 30,000원 |
| 148. 「전기공사업법」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(상속) 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5,000원  |
| 149.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(종합설계업) 등록신청 수수료          | 1건당 50,000원 |
| 150.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(전문1종) 등록신청 수수료           | 1건당 30,000원 |
| 151.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(전문2종) 등록신청 수수료           | 1건당 20,000원 |
| 152.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(종합감리업) 등록신청 수수료          | 1건당 50,000원 |
| 153.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(전문감리업) 등록신청 수수료          | 1건당 30,000원 |
| 154.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,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수수료 | 1건당 5,000원  |
| 155.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,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    | 1건당 5,000원  |
| 156.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(종합설계업) 양도·양수 신고 수수료    | 1건당 45,000원 |
| 157.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(전문1종) 양도·양수 신고 수수료     | 1건당 25,000원 |
| 158.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(전문2종) 양도·양수 신고 수수료     | 1건당 15,000원 |
| 159.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(종합감리업)의 양도·양수 신고 수수료   | 1건당 45,000원 |
| 160.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(전문감리업)의 양도·양수 신고 수수료   | 1건당 25,000원 |
| 161.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(종합설계업)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    | 1건당 45,000원 |
| 162.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(전문1종)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     | 1건당 25,000원 |
| 163.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15,000원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설물 설계업(전문2종)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64.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(종합감리업)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| 1건당 45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65.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(전문감리업)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| 1건당 25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66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(골프장업 및 스키장업)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          | 1건당<br>10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67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(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)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    | 1건당 5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68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(골프장업 및 스키장업)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       | 1건당 3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69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(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)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 | 1건당 2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70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(골프장업 및 스키장업) 등록신청 수수료          | 1건당 5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71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(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) 등록신청 수수료    | 1건당 3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72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(골프장업 및 스키장업)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     | 1건당 2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73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(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)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| 1건당 1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74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3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75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1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76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필지당<br>1,000원<br>(컬러 발급의<br>경우에는<br>1,500원) |
| 177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     | 1건당 6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78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5조 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(신규) 신고 수수료 | 1건당 1,500원 |
| 179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5조 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(변경) 신고 수수료 | 1건당 1,500원 |
| 180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  | 1건당 1,500원 |
| 181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수수료      | 1건당 1,500원 |
| 182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6조 단서에 따라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수료 | 1건당 1,500원 |